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0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김기웅 · 이만희 · 박충권

김기현 · 김 건 · 백종현

김태호 · 추경호 · 박성훈

윤재옥 · 임종득 · 최은석

최형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는 총 1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이동통신 3사의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20,171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

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 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연관성”을 “연관성(제4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의”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가입일”은 “이용자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일자”로 본다.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3조제3항에”를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을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기관등은”을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수사기관등은”을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은”을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은”을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은”을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수사기관등의”를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의”로 한다.

제94조제3호 중 “제83조제3항을”을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3호 중 “제83조제5항을”을 “제83조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83조제7항을”을 “제83조제8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③ (생략) <u><신설></u>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가입일”은 “이용자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일자”로 본다.</u>
④ <u>제3항에</u>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u>연관성</u> ,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	⑤ <u>제3항 및 제4항에</u> ----- ----- ----- <u>연관성</u> (제4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
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
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
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

⑥ -----제3항부
터 제5항까지의-----

-----.

⑦ -----

-----제6항에-----

-----.

⑧ -----제3항 및
제4항에-----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
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⑧·⑨ (생략)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
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
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
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
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제6항에-----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
조제3항 및 제4항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 및
외교부장관은-----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
은-----

-----.

1. · 2. (현행과 같음)

⑥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
은-----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행) ①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 ~ 4.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1.·2. (현행과 같음)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
등 및 외교부장관의-----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
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5항을</u> 위반하여 관 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 추어 둔 자	13. <u>제83조제6항을</u> ----- ----- ----- -----
14. <u>제83조제7항을</u> 위반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 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u>제83조제8항을</u> ----- ----- -----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